

<2025년 시험 대비 배상책임 및 근재보험 추록>

■ 근로자 재해 공제 후 과실상계적용에 관한 문제. 상실수익 산정 시 일용근로자 근로일수 22일에서 20일 변경에 관한 대법원판례를 적용하여 계산 방식을 수정하였으며 특수건물에 입점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사고로 타인이 사상된 경우 보험자 보상책임 순서 등에 관하여 최근 판례의 경향을 참작하여 기존 문제를 수정하였습니다. 24년 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이와 함께 24년 교재에 없는 기출 24년도 문제와 25년 교재에 수록된 의무보험 중 의료기기 배상책임보험, 수렵배상책임보험, 수상레저 배상책임보험에 관한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페이지	24년 교재 원내용	25년 교재 수정내용
p257	- 정년~가동연한(60세)까지 : $(75,000\text{원} \times 22\text{일}) \times (60 - 10) \times (1 - 1/3) = 55,000,000\text{원}$ - 계 : 85,000,000원 ③ 정신적 손해(위자료) : 80,000,000원 ④ 합계 : 170,000,000원 ⑤ 지급보험금 : 170,000,000원 - 자기부담금 5,000,000원 = 165,000,000원	② 소극적 손해(일실수익액) - 사고~정년까지(55세) : $450\text{만원} \times 10\text{H} \times (1 - 1/3) = 3,000\text{만원}$ - 정년이후~60세까지¹⁾ : $(75,000\text{원} \times 20\text{일}^{2)}) \times 50\text{H}(60 - 10) \times (1 - 1/3) = 5,000\text{만원}$ - 계 : 8,000만원 ③ 정신적 손해(위자료) : 8,000만원 ④ 합계 : 16,500만원 ⑤ 지급보험금 : 16,500만원 - 자기부담금 500만원 = 16,000만원 <각주내용> 1)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로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종료는 현재 만 65세이나 출제 당시 지문에 언급된 기간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정하였음 2) 2024년 내려진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이전까지는 일용근로자 근로 일수를 22일로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였으나 판결 이후 한 달 근로일수를 현재 20일로 판단하고 있으니 이 부분을 적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였음
P261	Ⅲ. 산재보험금 1) 유족급여 10만원 $\times$ 1,300일본 = 130,000,000원	Ⅲ. 산재보험금 1) 유족급여 10만원 $\times$ 1,300일본 = 130,000,000원

	2) 장례비 10만원 × 120일분 = 12,000,000원 IV. E · L 1) 적극적 손해 ① 장례비 : 300만원 - 1,200만원(장례비) = 0 2) 소극적 손해 ① 일실수입 • 사고 ~ 정년 300만원 × 100H × 2/3 = 20,000만원 • 정년이후 ~ 가동연한 (80,000원 × 22일) × 30H × 2/3 = 3,520만원 • 합계 : 235,200,000원 - 130,000,000원 = 105,200,000원 ⇒ 손익상계 : 105,200,000원 × (1 - 20%) = 84,160,000원 ② 일실퇴직금 • 예상퇴직금 (10만원 × 30일) × 25년 = 7,500만원 • 기근속퇴직금 (10만원 × 30일) × 15년 = 4,500만원 • 일실퇴직금 7,500만원 × [1/(1 + 0.05 × 10년)] - 4,500만원 × (1 - 20%) = 400만원 3) 정신적 손해 ① 위자료 8,000만원 × [1 - (6/10 × 20%)] = 7,040만원 4) 합계 84,160,000원 + 4,000,000원 + 70,400,000원 = 158,560,000원 < 한도 2억 5) 지급금액 : 158,560,000원	2) 장례비 10만원 × 120일분 = 12,000,000원 IV. E · L 1) 적극적 손해 ① 장례비 : 300만원 - 1,200만원(장례비) = 0 2) 소극적 손해 ① 일실수입 • 사고 ~ 정년 300만원 × 100H × (1 - 1/3) = 20,000만원 • 정년이후 ~ 가동연한 (80,000원 × 20일) × 30H × (1 - 1/3) = 3,200만원 • 합계 : 23,200만원 ② 일실퇴직금 • 예상퇴직금 (10만원 × 30일) × 25년 = 7,500만원 • 기근속퇴직금 (10만원 × 30일) × 15년 = 4,500만원 • 일실퇴직금 7,500만원 × [1/(1 + 0.05 × 10년)] - 4,500만원 = 500만원 ③ 계 : 23,700만원 ⇒ 손익상계 : 23,700만원 - 13,000만원(유족급여) = 10,700만원 과실상계 : 10,700만원 × (1 - 20%) = 8,560만원 3) 정신적 손해 ① 위자료 8,000만원 × [1 - (6/10 × 20%)] = 7,040만원 4) 합계 15,600만원 < 한도 2억 5) 지급금액 : 15,600만원
P265	III. 복합장해율산정 1) 척추제 ① 경추 추간관 탈출증 : 50% × (1 - 20%) = 40% ② 요추 추간관 탈출증 : 30% × (1 - 50%) = 15% ③ 40% + (1 - 40%) × 15% = 49% 2) 비장결손 : 10% 3) 복합장해율 : 49% + (1 - 49%) × 10% = 54.1% IV. 지급보험금 1) 일실수익 20,000만원 × 54.1% × (1 - 20%) = 8,656만원 → 손익상계 8,656만원 - 4,500만원 = 4,156만원 2) 향추(성형비) 800만원 × (1 - 20%) = 640만원 3) 합계 : 4,796만원 < 한도 1억 4) 지급금액 : 4,796만원	III. 복합장해율산정 1) 척추제 ① 경추 추간관 탈출증 : 50% × (1 - 20%) = 40% ② 요추 추간관 탈출증 : 30% × (1 - 50%) = 15% ③ 40% + (1 - 40%) × 15% = 49% 2) 비장결손 : 10% 3) 복합장해율 : 49% + (1 - 49%) × 10% = 54.1% IV. 지급보험금 1) 적극적 손해액 비급여 향후치료비(성형비) : 800만원 × (1 - 20%) = 640만원 2) 소극적 손해 상실수익 : 20,000만원 × 54.1% = 10,820만원 ⇒ 손익상계 : 10,820만원 - 4,500만원(장해급여) = 6,320만원 과실상계 : 6,320만원 × (1 - 20%) = 5,056만원 3) 합계 : 5,696만원 < 한도 1억 4) 지급금액 : 5,696만원
P272	질문3) 상기 다수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산정 우선순위를	질문3) 상기 다수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산정 우선순위를

	약술하시오. (5점) 사안은 법률상책임을 지는 자가 복수로 존재하며 A, B보험사는 별개의 피보험자가 각각 법률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이다. 그로 인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특수건물 소유자 또는 업주 乙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보험사는 각 보상한도 내에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존재한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 음식점의 화기취급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업소가 가입한 B보험사의 보험에서 선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겠다. 질문4) 피해자별, 보험사별 지급보험금을 산정하고, 그 산출과정을 기재하시오. (15점) I. 乙 (손해액 : 3,000만원) 1) A보험사 : 3,000만원 보상 2) B보험사 : 면책(피보험자) II. 丙 (손해액 : 1.5억) 1) A보험사 : 면책(초과손해없음) 2) B보험사 : 15,000만원 보상 ① 다중이화배책 : 15,000만원 ≤ 한도 15,000만원 ▶ 15,000만원 ⇒ 분담 : 15,000만원 × 15,000만원 / 15,000만원 + 5,000만원 = 11,250만원 보상 ② 시설소유관리자특약 : 15,000만원 -100만원 > 한도 5,000만원 ▶ 5,000만원 ⇒ 분담 : 15,000만원 × 5,000만원 / 15,000만원 + 5,000만원 = 3,750만원 보상 III. 丁 (손해액 : 2억) 1) A보험사 : 면책(초과손해없음) 2) B보험사 : 2억 보상 ① 다중이화배책 : 20,000만원 > 한도 15,000만원 ▶ 15,000만원 보상 ⇒ 분담 : 20,000만원 × 15,000만원 / 15,000만원 + 5,000만원 = 15,000만원 보상 ② 시설소유관리자특약 : 20,000만원 -100만원 > 한도 5,000만원 ▶ 5,000만원 ⇒ 분담 : 20,000만원 × 5,000만원 / 15,000만원 + 5,000만원 = 5,000만원 보상	약술하시오. (5점) 상기 사례는 법률상책임을 지는 자가 복수로 존재는 경우로 공동불법행위자들이 피보험자로 있는 A보험(특수건물소유자 갑), B보험사(다중이용업소 업주을)는 피해자의 손해에 관하여 피보험자들이 부담하는 법률상책임을 담보할 책임이 발생한다. 그로 인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특수건물 소유자 또는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을 부담하는 업주 乙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보험사는 각 보상한도 내에서 그에 관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존재한다. 사안의 경우 무과실 책임을 담보하는 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부 화재보험으로 선보상하고 피해자가 보상받지 못한 초과 손해에 관하여는 업주가 가입한 보험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과 시설소유관리자특별약관)에서 분담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풀이한다.³⁾ <각주내용> 3)최근 판례경향 참조 질문4) 피해자별, 보험사별 지급보험금을 산정하고, 그 산출과정을 기재하시오. (15점) I. 乙 (손해액 : 3,000만원) 1) A보험사 : 3,000만원 보상 2) B보험사 : 면책(피보험자) II. 丙 (손해액 : 1.5억) 1) A보험사 : 15,000만원 보상 2) B보험사 : 면책(초과손해없음) III. 丁 (손해액 : 2억) 1) A보험사 : 15,000만원 보상 2) B보험사 : 5,000만원 보상 ① 다중이화배책 : 5,000만원 < 한도 15,000만원 ▶ 5,000만원 보상 ⇒ 분담 : 5,000만원 × 5,000만원 / 5,000만원 + 4,900만원 = 2,525만원 보상 ② 시설소유관리자특약 : 5,000만원 -100만원 < 한도 5,000만원 ▶ 4,900만원 ⇒ 분담 : 5,000만원 × 4,900만원 / 5,000만원 + 4,900만원 = 2,475만원 보상
P274	I. 지급보험금 산정 1. 적극적 손해 보조구비 : 1,000,000원 × 2.25(0.9 + 0.75 + 0.6) × (1 - 20%) = 1,800,000원 ⇒ 향후치료비, 보조구비, 개호비 손해 중 산재보험법 등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 그 지급 예정 금액 및 시기 등에 대하여 나아가 심리하여 이를 확정하는 다음 각각의 장래 급여액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여 위 각 손해액에서 공제하고 각 나머지 손해액에	I. 지급보험금 산정 1. 적극적 손해 보조구비 : 1,000,000원 × 2.25(0.9 + 0.75 + 0.6) × (1 - 20%) = 1,800,000원 ⇒ 향후치료비, 보조구비, 개호비 손해 중 산재보험법 등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 그 지급 예정 금액 및 시기 등에 대하여 나아가 심리하여 이를 확정하는 다음 각각의 장래 급여액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여 위 각 손해액에서 공제하고 각 나머지 손해액에

	대해서만 보험금지급 의무를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581 판결) 2. 소극적 손해 1) 휴업손해 ① 사고일 ~ 치료종결일 : 90,000원 × 22일 × 100% × 3H × (1-20%) = 4,752,000원 ② 손익상계 : 4,752,000원 - 10,000,000원 = 0 2) 상실수익 ① 복합장해율 : 25% + (1 - 25%) × 20% = 40% ② 치료종결 ~ 가동종료 100,000원 × 22일 × 40% × 100H × (1-20%) = 70,400,000원 ③ 손익상계 : 70,400,000원 - 50,000,000원 = 20,400,000원 3) 소계 : 20,400,000원 3. 정신적 손해 위자료 : 80,000,000원 × 40% × [1 - (6/10 × 20%)] = 28,160,000원 4. 합계 : 50,360,000원 < 한도1억 5. 지급금액 : 50,360,000원	대해서만 보험금지급 의무를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581 판결) 2. 소극적 손해 1) 휴업손해 ① (9만원×22일⁴⁾) × 100% × 3H = 594만원 ⇒ 손익상계: 594만원 - 1,000만원(휴업급여) = 0 2) 상실수익 ① 복합장해율 : 25% + (1 - 25%) × 20% = 40% ② (10만원×22일) × 40% × 100H = 8,800만원 ⇒ 손익상계: 8,800만원 - 5,000만원(장해급여) = 3,800만원 과실상계: 3,800만원 × (1-20%) = 3,040만원 3) 소계 : 3,040만원 3. 정신적 손해 위자료 : 8,000만원 × 40% × [1 - (6/10 × 20%)] = 2,816만원 4. 합계 : 5,856만원 < 한도1억 5. 지급금액 : 5,856만원 <각주내용> 4) 최근 대법원판례에 따라 해당 근로일수는 20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문제에 22일을 적용하도록 기술되어있기 때문에 22일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음
P294	Ⅲ. 지급금액 1) 산재 지급 내역 ① 요양급여 : 100만원 ② 유족급여 : 10,000만원 (수급권자 : 배우자) ③ 장의비¹⁰⁾ : 1,200만원 2)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① 적극적 손해 치료비 : 100만원 × (1 - 40%) = 60만원 ⇒ 손익상계 : 60만원 - 100만원(요양급여) = 0 ② 소극적 손해 ① 상실수익 : 250만원 × 100% × 100H × (1 - 40%) × 2/3 = 10,000만원 •법정상속배우자(1.5) : 10,000만원 × 3/5 = 6,000만원 자녀(1) : 10,000만원 × 2/5 = 4,000만원 ⇒ 손익상계 : 6,000만원(배우자 상속 지분) - 10,000만원(요양급여) = 0 ㉠ 소계 : 4,000만원 ③ 정신적 손해 위자료 : 5,000만원(유족과 합의된 위자료로 과실 적용 안함) ④ 합계 : 9,000만원 < 한도1억 ⑤ 지급금액 : 9,000만원	Ⅲ. 지급금액 1) 산재 지급 내역 ① 요양급여 : 100만원 ② 유족급여 : 10,000만원 (수급권자 : 배우자) ③ 장의비²²⁾ : 1,200만원 2)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① 적극적 손해 치료비 : 100만원 - 100만원 (요양급여) = 0 ② 소극적 손해 ① 상실수익 : 250만원 × 100% × 100H × 2/3 = 16.666만원 •법정상속 배우자(1.5) : 16.666만원 × 3/5 = 10,000만원 ⇒ 손익상계 : 10,000만원(배우자 상속지분) - 10,000만원(요양급여) = 0 자녀(1) : 16.666만원 × 2/5 = 6.666만원 × (1-40%) = 4,000만원 ㉠ 소계 : 4,000만원 ③ 정신적 손해 위자료 : 5,000만원(유족과 합의된 위자료로 과실 적용 안함) ④ 합계 : 9,000만원 < 한도1억 ⑤ 지급금액 : 9,000만원
P307	질문 2) 치료종결일 이후의 일실수익을 계산하고, 그 산출과정을 기재하시오. (10점) 1. 치료종결이후 ~ 정년 3,000,000원 × 60% × (50H - 20H) × (1-30%) = 37,800,000원	질문 2) 치료종결일 이후의 일실수익을 계산하고, 그 산출과정을 기재하시오. (10점) 1. 치료종결이후 ~ 정년 300만원 × 60% × 30H(50-20) × (1-30%) = 3,780만원

	II. 정년 이후 ~ 가동연한 $(90,000\text{원} \times 22\text{일}) \times 60\% \times (100H - 50H) \times (1 - 30\%) = 41,580,000\text{원}$ III. 소계 79,380,000원 질문 5)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계산하고, 그 산출과정을 기재하시오. (2점) I. 휴업손해 $3,000,000\text{원} \times 100\% \times 20H \times (1-30\%) = 42,000,000\text{원}$ 손익상계 : $42,000,000\text{원} - 58,000,000\text{원} = 0$ II. 상실수익 79,380,000원 III. 일실퇴직금 3,528,000원 IV. 개호비 302,400,000원 V. 합계 385,308,000원 > 한도2억 $\Rightarrow$ 2억보상	II. 정년 이후 ~ 가동연한 $(9\text{만원} \times 20\text{일}) \times 60\% \times 50H(100-50) \times (1 - 30\%) = 3,780\text{만원}$ III. 소계 7,560만원 질문 5)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계산하고, 그 산출과정을 기재하시오. (2점) I. 휴업손해 $300\text{만원} \times 100\% \times 20H \times (1-30\%) = 4,200\text{만원}$ $\Rightarrow$ 손익상계 : $4,200\text{만원} - 5,800\text{만원}(\text{휴업급여}) = 0$ II. 상실수익 7,560만원 III. 일실퇴직금 352.8만원 IV. 개호비 30,240만원 V. 합계 38,152.8만원 > 한도2억 $\Rightarrow$ 2억 보상
P310	질문 1) 피해자 “김OO”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액을 계산하고 그 산출과정을 기재하시오. (10점) I. 상실수익 1) 사고 ~ 정년 $3,000,000\text{원} \times 100\% \times 40H \times (1-20\%) \times (1-1/3) = 64,000,000\text{원}$ 2) 사고 ~ 가동기간 $(90,000\text{원} \times 22\text{일}) \times 100\% \times (90H-40H) \times (1-20\%) \times (1-1/3) = 52,800,000\text{원}$ 3) 소계 : 116,800,000원 II. 장례비 400만원(제반 사정을 고려한 판결금액) III. 위자료 1억원 $\times (1-6/10 \times 20\%) = 88,000,000\text{원}$ IV. 합계 208,800,000원 질문 2) A, B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계산하고 그 산출과정을 기재하시오. (10점) I. 각 보험사 독립책임액 1) A보험사 : C·G·L $100,000,000\text{원}(\text{보상한도}) - 10,000,000\text{원}(\text{자기부담금}) = 90,000,000\text{원}$ 2) B보험사 : 다중이 $208,800,000\text{원}(\text{손해액}) - 0\text{원}(\text{자기부담금}) = 208,800,000\text{원}(\text{손해액})$ > 한도 150,000,000원 II. 독립책임액 비례 분담	질문 1) 피해자 “김OO”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액을 계산하고 그 산출과정을 기재하시오. (10점) I. 상실수익 1) 사고 ~ 정년 $300\text{만원} \times 100\% \times 40H \times (1-20\%) \times (1-1/3) = 6,400\text{만원}$ 2) 사고 ~ 가동기간 $(9\text{만원} \times 20\text{일}) \times 100\% \times 50H(90-40) \times (1-20\%) \times (1-1/3) = 4,800\text{만원}$ 3) 소계 : 11,200만원 II. 장례비 400만원 $\times (1-20\%) = 320\text{만원}$ III. 위자료 1억원 $\times (1-6/10 \times 20\%) = 8,800\text{만원}$ IV. 합계 20,320만원 질문 2) A, B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계산하고 그 산출과정을 기재하시오. (10점) I. 각 보험사 독립책임액 1) A보험사 : C·G·L $20,800\text{만원}(\text{손해액}) - 1,000\text{만원}(\text{자기부담금}) > 10,000\text{만원}(\text{보상한도}) - 1,000\text{만원}(\text{자기부담금}) \Rightarrow 9,000\text{만원}$ 2) B보험사 : 다중이 $20,800\text{만원}(\text{손해액}) - 0\text{원}(\text{자기부담금}) > 15,000\text{만원}(\text{보상한도}) \Rightarrow 15,000\text{만원}$ II. 독립책임액 비례 분담

	1) A보험사 $208,800,000원 \times 90,000,000원 / 90,000,000원 + 150,000,000원 = 78,300,000원$ 2) B보험사 $208,800,000원 \times 150,000,000원 / 90,000,000원 + 150,000,000원 = 130,500,000원$	1) A보험사 $20,800만원 \times 9,000만원 / 9,000만원 + 15,000만원 = 7,800만원$ 보상 2) B보험사 $20,800만원 \times 15,000만원 / 9,000만원 + 15,000만원 = 13,000만원$ 보상
P326	II. 보험자 보상금액¹³⁾ 1) A보험사 ㉠ 을 (사망) : 2억 > 사망한도 15,000만원 ▶ 1.5억 보상 ㉡ 병 (사망) : 2.5억 - 1.5억 = 1억 < 사망한도 15,000만원 ▶ 1억 보상 ㉢ 정 (부상치료 후 장애) ㉣ 부상 : 3,000만원 - 1,000만원 = 2,000만원 > 4급한도 1,000만원 ▶ 1,000만원 ㉤ 장애 : 1억원 - 6,000만원 = 4,000만원 > 7급한도 6,000만원 ▶ 4,000만원 ㉥ 합계 : 7,000만원 보상 2) B보험사 ㉠ 을 (사망) : 면책 (피보험자) ㉡ 병 (사망) : 2.5억 > 사망한도 15,000만원 ▶ 1.5억 보상 ㉢ 정 (부상치료 후 장애) ㉣ 부상 : 3,000만원 > 4급한도 1,000만원 ▶ 1,000만원 ㉤ 장애 : 1억원 > 7급한도 6,000만원 ▶ 6,000만원 ㉥ 합계 : 7천만원 보상	II. 보험자 보상금액⁵⁾ 1) A보험사 ㉠ 을 (사망) : 2억 > 사망한도 15,000만원 ▶ 1.5억 보상 ㉡ 병 (사망) : 2.5억 > 사망한도 15,000만원 ▶ 1.5억 보상 ㉢ 정 (부상치료 후 장애) ㉣ 부상 : 3,000만원 > 4급한도 1,000만원 ▶ 1,000만원 ㉤ 장애 : 1억원 > 7급한도 6,000만원 ▶ 6,000만원 ㉥ 합계 : 7천만원 보상 2) B보험사 ㉠ 을 (사망) : 면책 (피보험자 본인) ㉡ 병 (사망) : 2.5억 - 1.5억 (A보험사 보상) = 1억 < 사망한도 15,000만원 ▶ 1억 보상 ㉢ 정 (부상치료 후 장애) ㉣ 부상 : 3,000만원 - 1,000만원 (A보험사 보상) = 2,000만원 > 4급한도 1,000만원 ▶ 1,000만원 ㉤ 장애 : 1억원 - 6,000만원 (A보험사 보상) = 4,000만원 < 7급한도 6,000만원 ▶ 4,000만원 ㉥ 합계 : 5,000만원 보상 <각주> 5) 두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각각의 법률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지급 순서에 관하여 그 우열을 가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 경향을 참고하여 무과실책임을 부담하는 특수건물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선 보상, 민법 제758조 책임을 부담하는 업주가 가입한 보험으로 초과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 풀이하겠다.
P339	II. A보험사 보상금액 (영업배상책임보험) 1) 적극적 손해 장례비 : 500만원 - 2,400만원 = 0 2) 소극적 손해 ㉠ 사망 일실수익 ㉡ 사고 ~ 정년까지 $600만원 \times 30H \times (1 - 1/3) = 12,000만원$ ㉢ 정년 ~ 가동연한종료까지 $(15만원 \times 22일) \times 50H(80 - 30) \times (1 - 1/3) = 11,000만원$ ㉤ 계 : 23,000만원 - 26,000만원 = 0 ㉥ 일실 퇴직금 ㉦ 총 퇴직금	II. A보험사 보상금액 (영업배상책임보험) 1) 적극적 손해 장례비 : 500만원 - 2,400만원 = 0 2) 소극적 손해 ㉠ 사망 일실수익 ㉡ 사고 ~ 정년까지 $600만원 \times 30H \times (1 - 1/3) = 12,000만원$ ㉢ 정년 ~ 가동연한종료까지 $(15만원 \times 20일) \times 50H(80 - 30) \times (1 - 1/3) = 10,000만원$ ㉤ 계 : 22,000만원 - 26,000만원 = 0 ㉥ 일실 퇴직금 ㉦ 총 퇴직금

	$\frac{(600\text{만원} \times 22\text{년})}{13,200\text{만원}} + \frac{(600\text{만원} \times 10/12)}{500\text{만원}} = 13,700\text{만원}$ ㉠ 기수령 퇴직금 $\frac{(600\text{만원} \times 19\text{년})}{11,400\text{만원}} + \frac{(600\text{만원} \times 10/12)}{500\text{만원}} = 11,900\text{만원}$ ㉡ 일실퇴직금 $13,700\text{만원} \times \frac{1}{1.15} - 11,900\text{만원} \times (1 - 30\%) = 0$ ▶ 0.869....가 되므로 소수점 첫째자리 미만 절사 이므로 0.8로 봄 ③ 소계 : 0 3) 정신적 손해 위자료 : 1억 $\times (1 - 6/10 \times 30\%) = 8,200\text{만원}$ 4) 합계 8,200만원 5) 보험자 보상금액 8,200만원 - 30만원 < 한도 2억 ▶ 8,170만원 보상 ⇒ 3,268만원 (8,170만원 $\times$ 40%) △△이앤씨 구상 가능	㉠ 총 퇴직금 $\frac{(600\text{만원} \times 22\text{년})}{13,200\text{만원}} + \frac{(600\text{만원} \times 10/12)}{500\text{만원}} = 13,700\text{만원}$ ㉡ 기수령 퇴직금 $\frac{(600\text{만원} \times 19\text{년})}{11,400\text{만원}} + \frac{(600\text{만원} \times 10/12)}{500\text{만원}} = 11,900\text{만원}$ ㉢ 일실퇴직금 $13,700\text{만원} \times \frac{1}{1.15} - 11,900\text{만원} \times (1 - 30\%) = 0$ ▶ 0.869....가 되므로 소수점 첫째자리 미만 절사 이므로 0.8로 봄 ③ 소계 : 0 3) 정신적 손해 위자료 : 1억 $\times (1 - 6/10 \times 30\%) = 8,200\text{만원}$ 4) 합계 8,200만원 5) 보험자 보상금액 8,200만원 - 30만원 < 한도 2억 ▶ 8,170만원 보상
25년 교재 새롭게 수록된 내용		
24년 기출	01 '주식회사 A'가 소유하고 있는 특수건물 지하1층에서 인테리어 공사 중에 화재가 발생하여 공사를 관리 중이던 '주식회사 A'의 직원 B와 '주식회사 A'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입점해 있는 지하 1층의 푸드코트 식당 소속의 직원 C가 화상 등 상해를 입었다. 화재 원인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A'의 직원 B의 과실 50%와 푸드코트 식당의 직원 C의 과실 50%가 인정되었다. 아래의 전제조건을 참고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25점)	질문 1) '갑' 보험회사의 피해자별 보상책임 여부를 설명하고 지급보험금을 산정하십시오. (15점) I. 보험자 보상책임 1) 보상하는 손해 근로자재해보상보험 '사용자배상책임특별약관'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부담하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특별약관으로 보험자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한 손해에 관하여 보상한다. 2) 피해자 별 면·부책 상기 사례의 경우 피해자 B의 경우 피보험자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보험자의 책임은 발생하나 C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B : 부책 / C : 면책 II. B의 손해로 인한 지급보험금 1) 적극적 손해 ① 치료비 : 2,000만원 - 2,000만원(요양급여) = 0 ② 비급여치료비 : 2,000만원 $\times (1 - 50\%) = 1,000\text{만원}$ ③ 소계 : 1,000만원 2) 소극적 손해 •노동능력상실율 : $50\% \times \frac{(1 - 50\%) \times 20\%}{10\%} = 60\%$ ① 휴업손해 500만원 $\times 100\% \times 10\text{H} = 5,000\text{만원}$ ➡ 손익상계 : 5,000만원

	< 전제조건 > [보험계약사항] (1) 갑 보험회사 • 보험종목 : 국내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 사용자배상책임특별약관 • 계약자/피보험자 : '주식회사 A' • 보상한도액 : 1인당 2억원 / 1사고당 3억원 (2) 을 보험회사 • 보험종목 : 화재보험 / 신체손해배상책임특별약관 • 건물소유자의 종업원배상책임부보상 추가특별약관 • 계약자 / 피보험자 : '주식회사 A' • 보상한도액 : 의무보상한도액 [기초자료] (1) 피해자 B • 소속 : '주식회사 A' 직원 • 월평균임금 : 5,000,000원 • 보통인부 일용노임 : 150,000원 • 호프만계수 (재산상 편의를 위한 임의계수임) • 사고일 ~ 입원종료일 : 12개월 (H계수 : 10) • 사고일 ~ 정년까지 : 60개월 (H계수 : 50) • 사고일 ~ 가동기간 : 120개월 (H계수 : 100) • 사용과 책임비율 50% • 치료비 : 20,000,000원 • 비급여치료비 (반흔제거술) : 20,000,000원 • 후유장애 (맥브라이드 기준) • 양측 수지 부전장적 50% (영구장애) • 우측 슬관절 부전장적 20% (영구장애) • 위자료와 입실회복금은 고려하지 않음. • 근로복지공단 산제지급내역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요양급여</th><th>휴업급여</th><th>장해급여</th></tr> </thead> <tbody> <tr> <td>20,000,000원</td><td>40,000,000원</td><td>200,000,000원</td></tr> </tbody> </table>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20,000,000원	40,000,000원	200,000,000원	-4,000만원(휴업급여) = 1,000만원 과실상계 : 1,000만원 $\times$ (1 - 50%) = 500만원 ② 장해 상실수익 • (정년까지) : 500만원 $\times$ 60% $\times$ 40H(50 - 10) = 12,000만원 • (가동종료까지) : (15만원 $\times$ 20일) $\times$ 60% $\times$ 50H(100 - 50) = 9,000만원 • 계 : 21,000만원 ■ 손익상계 : 21,000만원 - 20,000만원(장해급여) = 1,000만원 과실상계 : 1,000만원 $\times$ (1 - 50%) = 500만원 ③ 소계 : 1,000만원 3) 합계 : 2,000만원 4) 총 보상금액 : 2,000만원 < 1인당 2억 ▶ 2,000만원 보상 질문 2) '을' 보험회사의 피해자별 보상책임 여부를 설명하고 지급보험금을 산정하십시오. (10점) I. 보험자 보상책임 1) 보상하는 손해 특약부화재보험 신체손해화재배상책임보험은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인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발생한다. 2) 피해자 별 면·부책 상기 사례의 경우 피보험자인 특수건물 소유자에게 있어 피해자 B와 C 모두 타인에 해당하나 특별약관으로 근로자의 재해를 담보하지 않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피보험자의 근로자인 B의 손해는 담보하지 않으며 C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 B : 면책 / C : 부책 II. C의 손해로 인한 지급보험금 1) 부상 ① 치료비 : 2,000만원 ② 지급금액 : 2,000만원 < 한도 3,000만원 ▶ 2,000만원 2) 장해 • 7급과 7급 장해 조정 : 6급 ① 상실수익 : 300만원 $\times$ 40개월 $\times$ 70% = 84,000만원 ② 지급금액 : 84,000만원 > 6급 한도 7,500만원 ▶ 7,500만원 3) 총 보상금액 : 9,500만원 보상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20,000,000원	40,000,000원	200,000,000원						

- 1)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로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종료는 현재 만 65세이나 출제 당시 지문에 언급된 기간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정하였음
- 2) 2024년 내리진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이전까지는 일용근로자 근로 일수를 22일로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였으나 판결 이후 한 달 근로일수를 현재 20일로 판단하고 있으니 이 부분을 적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였음
- 3) 최근 판례경향 참조
- 4) 최근 대법원판례에 따라 해당 근로일수는 20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문제에 22일을 적용하도록 기술되어있기 때문에 22일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음
- 5) 두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각각의 법률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지급 순서에 관하여 그 우열을 가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 경향을 참고하여 무과실책임을 부담하는 특수건물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선 보상, 민법 제758조 책임을 부담하는 업주가 가입한 보험으로 초과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 풀이하겠다.

(2) 피해자 C • 소속 : 푸드코트 식당 직원 • 치료비 : 20,000,000원 • 월평균임금 : 3,000,000원 • 호프만제수(제산상 편의를 위한 임의제수임) • 장래의 취업가능기간: 40개월 (H제수: 30) • 부상 및 장애 등급 • 부상 1급 연부조직의 손상이 심한 부상 • 장애 7급 외모에 뚜렷한 흉터 • 장애 7급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애 • 맥브라이드 병합장애 70% • 위자료 : 20,000,000원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부상등급</th><th>부상등급 보험금액</th><th>장애등급</th><th>장애등급 보험금액</th></tr> </thead> <tbody> <tr> <td>1급</td><td>3,000만원</td><td>6급</td><td>7,500만원</td></tr> <tr> <td>2급</td><td>1,500만원</td><td>7급</td><td>6,000만원</td></tr> <tr> <td>3급</td><td>1,200만원</td><td>8급</td><td>4,500만원</td></tr> </tbody> </table>				부상등급	부상등급 보험금액	장애등급	장애등급 보험금액	1급	3,000만원	6급	7,500만원	2급	1,500만원	7급	6,000만원	3급	1,200만원	8급	4,500만원
부상등급	부상등급 보험금액	장애등급	장애등급 보험금액																
1급	3,000만원	6급	7,500만원																
2급	1,500만원	7급	6,000만원																
3급	1,200만원	8급	4,500만원																

02 간병인 A는 OO간병인협회와 간병인소개약정을 체결하고 요양병원 B에 파견되어 병실에서 중증질환 환자 C를 화장실로 데려가기 위해 이동하던 중에 환자 C의 손을 놓아버리는 탓에 중심을 잃고 넘어져 환자 C의 뇌출혈을 진단받고 사지마비 상태가 되었다. 아래의 전제조건을 참고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5점)

질문 1) 보험회사별 피해자에 대한 보상책임 여부를 설명하시오. (10점)

I. '갑'보험사 : 부책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은 직업전문인인 간병인의 업무수행 중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담보하는 보험이므로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발생함

II. '을'보험사 : 면책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의 하자 및 해당 시설의 업무수행중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담보하나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아니하므로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발생하지 않음

III. '병'보험사 : 면책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여 발생한 법률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나 직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므로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발생하지 않음

질문 2) 보험회사별 지급보험금을 산정하시오. (5점)

I. '갑' 보험사

1) 적극적 손해
 ① 치료비 : 5,000만원(기왕+향후) × 50% = 2,500만원
 ② 간병인 : 200만원 × 1.5인 × 50H × 50% = 7,500만원
 ③ 계 : 10,000만원

2) 소극적 손해
가동기간이 종료하였으므로 인정하지 않음

3) 정신적 손해
위자료 : 3,000만원 (과실을 포함한 모든 제반 사정을 고려하였으므로

	< 전제조건 > [보험계약사항] <table border="1"> <tr> <th>보험회사</th><th>갑 보험회사</th><th>을 보험회사</th><th>병 보험회사</th></tr> <tr> <td>보험종목</td><td>전문직업인(간병인) 배상책임보험</td><td>영업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관리자특약</td><td>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td></tr> <tr> <td>피보험자</td><td>간병인 A</td><td>요양병원 B</td><td>간병인 A</td></tr> <tr> <td>보상한도액</td><td>2억원 / 1인당</td><td>2억원 / 1인당</td><td>2억원 / 1인당</td></tr> <tr> <td>자기부담금</td><td>1,000,000원 / 1사고당</td><td>1,000,000원 / 1사고당</td><td>1,000,000원 / 1사고당</td></tr> </table> [기초자료] 피해자: 환자 C * 사고당시 만 80세 * 기대여명: 잔존여명 5년 * 노동능률상실율: 맥브라이드 장해 100% * 개호인: 사고일로부터 여명기간동안 성인 1.5인 / 일 * 개호비 (1인): 2,000,000원/월 * 기왕치료비: 10,000,000원 *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 구입비 (현재): 40,000,000원 * 책임제한: 환자의 나이 및 기왕증 관여도 등을 고려하여 간병인 책임을 50%로 제한함. * 위자료: 사고 경위, 나이, 과실 정도 등을 참작하여 30,000,000원 인정함. * 호프만계수(재산상 편의를 위한 임의계수임) * 사고일 ~ 기대여명까지: 60개월 (H계수: 50)	보험회사	갑 보험회사	을 보험회사	병 보험회사	보험종목	전문직업인(간병인) 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관리자특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	간병인 A	요양병원 B	간병인 A	보상한도액	2억원 / 1인당	2억원 / 1인당	2억원 / 1인당	자기부담금	1,000,000원 / 1사고당	1,000,000원 / 1사고당	1,000,000원 / 1사고당	그대로 인정) 4) 합계 13,000만원 5) '갑' 보험자 보상금액 13,000만원 -100만원 < 1인당 한도 2억 ▶ 12,900만원 보상 II. '을' 보험사 면책 III. '병' 보험사 면책
보험회사	갑 보험회사	을 보험회사	병 보험회사																			
보험종목	전문직업인(간병인) 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관리자특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	간병인 A	요양병원 B	간병인 A																			
보상한도액	2억원 / 1인당	2억원 / 1인당	2억원 / 1인당																			
자기부담금	1,000,000원 / 1사고당	1,000,000원 / 1사고당	1,000,000원 / 1사고당																			
03 제조물 책임법과 관련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15점)	질문 1) 제조물 '결함'의 의미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10점) I. 결함의 '정의'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제조상·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①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 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②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③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II.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03 제조물책임법과 관련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15점)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① 고의성의 정도 ②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③ 해당 제조물의 공급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④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⑤ 해당 제조물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 규모 ⑥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⑦ 제조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질문 2) 제조물 '결함 등의 추정'을 위하여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사실의 내용을 열거하시오. (5점) 피해자가 다음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①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② 해당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③ 해당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04 영업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5점)		질문 1)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7점) I. 회사는 보험금 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한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한다. II. 회사는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질문 2) 피해자가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때에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회사와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점) I. 의의

	직접청구권이란 피해자가 가해자인 피보험자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를 통하지 않고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II. 이론적 근거 직접청구권은 보험금청구로 보는 견해와 손해배상청구로 보는 견해로 구분되는데 보험자가 가해자인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라고 보는 손해배상청구설이 통설이다.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다. III. 법적 성질 1) 강행성 직접청구권은 상법상 강행규정으로 약관에서 이에 대해 제한한 규정을 두는 경우 그에 관한 규정은 무효이다. 2) 배타성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과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범위 내에서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직접청구권이 우선한다. 3) 독립성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함과 동시에 피해자는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이 동시에 발생한다.																
05 해외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의 ‘비업무상재해 확장담보 추가특별약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I. 서언 비업무상의 신체의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도 업무상의 재해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상하는 특별약관 II.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중독, 마취, 만취 등으로 생긴 손해 2) 과격한 운동이나 위험한 오락(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자동차경주 등)으로 인한 손해 3) 자해, 자살, 자살미수 등 이와 유사한 행위로 인한 손해 4) KCD상 아래 질병 및 이로 인한 손해 (암, 당뇨, 고혈압, 심질환, 뇌질환) <table><tr><th>병명</th><th>분류기호</th></tr><tr><td>1. 악성신생물</td><td>C00-C97, D00-09</td></tr><tr><td>2. 당뇨병</td><td>E10-E14</td></tr><tr><td>3. 만성류마티스성 심질환</td><td>I05-I09</td></tr><tr><td>4. 고혈압성 질환</td><td>I10-I15</td></tr><tr><td>5. 허혈성 심질환</td><td>I20-I25</td></tr><tr><td>6. 기타형태의 심질환</td><td>I30-I52</td></tr><tr><td>7. 뇌혈관질환</td><td>I60-I69</td></tr></table> 5) 매독, 임질, AIDS, 기타 이와 유사한 질병 및 이로 인한 손해	병명	분류기호	1. 악성신생물	C00-C97, D00-09	2. 당뇨병	E10-E14	3. 만성류마티스성 심질환	I05-I09	4. 고혈압성 질환	I10-I15	5. 허혈성 심질환	I20-I25	6. 기타형태의 심질환	I30-I52	7. 뇌혈관질환	I60-I69
병명	분류기호																
1. 악성신생물	C00-C97, D00-09																
2. 당뇨병	E10-E14																
3. 만성류마티스성 심질환	I05-I09																
4. 고혈압성 질환	I10-I15																
5. 허혈성 심질환	I20-I25																
6. 기타형태의 심질환	I30-I52																
7. 뇌혈관질환	I60-I69																

		6) 시력 감퇴 등 생리적 노화 또는 악화 및 이로 인한 손해 7) 치아에 관련된 질병 및 이로 인한 손해 8) 군인이 아닌 자로서 군사작전을 수행하거나 군사훈련을 받는 중 생긴 손해
	06 책임보험에서 담보하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금 중 위자료에 대한 법률적 근거와 산정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I. 근거 우리 민법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민법 제750조)하고 있는데 이에 구체적으로 민법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에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위자료에 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II. 산정기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과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여 위자료를 산정한다.
	07 아래의 C·G·L(Commercial General Liability Policy)보험 특별약관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0점)	질문 1) Waiver of Subrogation Clause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5점) 보통약관에서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및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함). 그러나 해당 특별약관의 가입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한다. 질문 2) Additional Insured(Vendors) Clause (추가 피보험자(판매인) 특별약관) (5점) 제조물의 결함이 판매인의 취급과정에서 발생하였는지 제조업자가 도산하거나 폐업한 경우 등에는 피해소비자에 대하여 당해 판매업자가 최종적인 책임부담자가 되기 때문에 판매업자는 이와 같은 위험에 대비하여 제조업자에게 제조업자가 가입하고 있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당해 판매인을 피보험자로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되는 데, 이를 담보하는 약관이 판매인특별약관이다.
의료기기 배상책임보험	* 의료기기배상책임보험 1. 의의 「의료기기법 제43조의6」에서는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는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망 또는 중대한 부작용 등으로 인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보험가입대상 및 보상하는 손해 (1) 보험가입대상 인체에 삽입되어 30일 이상 연속적으로 유지되는 의료기기의 제조업자·수입업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인체이식형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는 제외한다. 1) 수출만을 목적으로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은 인체이식형의료기기 제조업자 2) 수출만을 목적으로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은 인체이식형의료기기 수입업자 3)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인체이식형의료기기를 수입하는 수입업자 ① 해외의 인체이식형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가입 중인 보험 또는 공제가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보험금액 기준을 충족할 것 ② “①”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가 국내 환자에게 발생한 피해까지 보장할 것 (2) 보상하는 손해 수입한 보험 증권에 기재된 인체이식형 의료기기가 타인의 인체에 이식된 후 그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도중에 그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이 청구되어 법률상의 배상책임은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3)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지급) 1) 법률상손해배상금 ① 사망 : 1인당 15,0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손보상 (단, 실손해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최저보험금 2,000만원 보상) ② 부상 : 1급(3,000만원) ~ 14급(50만원)까지 급별 한도액 내에서 실손보상 ③ 후유장해 : 1급(15,000만원) ~ 14급(1,000만원)까지의 급별 한도액 내에서 실손보상 ④ 보험금 병급 •부상자가 치료 중 사망한 경우 : (①+②)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실손해 •부상자가 당해 부상의 원인으로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 (②+③) •장해보험금 지급 후 당해 부상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 (①-③) 2) 비용손해 손해방지비용, 권리보존행사비용, 협력비용은 보상한도를 초과해도 전액 보상하지만, 방어비용, 공탁보증보험료는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법령을 위반(고의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위반 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하여 제조, 수입한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③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⑤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	---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제조에 사용된 방위성 동위원소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⑦ 위 제⑥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⑧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⑨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 ⑩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⑪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⑫ 허가·인증된 사용기한 또는 표시된 사용기한을 경과한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의 고유의 흠, 마모, 찢어짐, 점진적인 품질하락에 의한 배상책임 ⑬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의료기기의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이 아닌 보증된 효능이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⑭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의 성질 또는 하자에 의한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⑮ 결함있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또는 결함있는 의료기기를 재료나 부품 또는 일부로 하는 재물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비용 및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⑯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를 이식받은 환자에 대한 의사(한의사 및 치과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⑰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임상시험 중 발생한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⑱ 의료기기법 상 제조 및 수입을 허가받지 않은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⑲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의 제조 및 수입상 표시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⑳ 재물손해, 재물의 분실 또는 도난(그로 인한 재물의 사용불능 손해를 포함)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수렵배상책임보험	* 수렵배상책임보험 1. 의의 「야생생물법 제51조」에서는 수렵장에서 수렵 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수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수렵활동의 정의 및 보상하는 손해 (1) 수렵활동 정의 수렵활동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수렵장 또는 사격장 내에서하는 수렵 활동을 말하며, 경찰서 또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총기 수령하는 시점부터 해당 기관으로 총기 반납하는 시점까지를 포함 (2) 보상하는 손해 수렵활동중총기의소유, 사용 또는 연결에 의하여 피해자의 신체 및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3)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1) 법률상손해배상금 ① 사망 : 1인당 15,000만원 이상 가입 ② 부상 : 1인당 3,000만원 이상 가입 ③ 후유장해 : 1인당 15,000만원 이상 가입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③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⑤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⑥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⑦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⑧ 업건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수상레저배상책임보험	수상레저배상책임보험 1. 의의 「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사용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상레저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보험가입대상 (1) 수상레저사업자 ①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하여 등록된 수상레저사업자로서 증권에 기재된 자 ② “①”의 근로자(임시고용인을 포함) ③ 증권에 별도로 기재된 자 (2) 업무용수상레저기구 소유자 ①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업무용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기업(기관) 또는 단체로서 증권에 기재된 자 ② “①”의 근로자(임시고용인을 포함) ③ 증권에 별도로 기재된 자 (3) 수상레저기구 개인소유자 ①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수상레저기구 개인소유자로서 증권에 기재된 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 ②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으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수상레저기구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③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보험증권에 기재된 수상레저기구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④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수상레저기구를 운전중인 자 3. 보상하는 손해 및 범위 (1)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수상레저기구의 이용자(조종자, 탑승자 및 피견인수상레저기구의 탑승자를 말합니다)의 신체 사상 등으로 인한 피보험자의 법률상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 (2)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금액(피해자 1인당 15,000만원) 이상으로 가입 4.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③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④ 원자핵물질(원자핵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과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방사선을 쏘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기타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 ⑤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 ⑥ 피보험자의 근로자(임시 고용인을 포함)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 사상 등에 대한 손해 ⑦ 피보험자가 “업무용수상레저기구 소유자” 또는 “수상레저기구 개인소유자”일 경우,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해당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⑧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인하여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및 법인 또는 기관에 발생한 일체의 손해 및 비용 5. 특별약관 (1) 치료비특별약관 수상레저기구의 이용자(조종자, 탑승자 및 피견인수상레저기구의 탑승자)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없는 신체 상해에 대한 치료비를 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 (2) 인명구조특별약관 수상레저기구의 이용자(조종자, 탑승자 및 피견인수상레저기구의 탑승자) 또는 제3자를 구조 또는 수색하기 위하여 직접 지급한 필요하고 유익한 비용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
--	---